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

전문공보관 형사1부장 오세문

전화 063-472-4328 / 팩스 063-472-4591

보 도 자 료

2022. 7. 13.(수)

제 목	**'익산 미륵산 사체유기 사건' 의 수사 경과 및 제1심 판결 선고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❑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정현주)는 '21. 4. 발생한 '익산 미륵산 사체유기 사건'을 송치받아 구속기간 중 CCTV 정밀분석, 현장검증, 법의학 자문의뢰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강제추행한 사실을 밝혀 '21. 5. 4.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였고, 재판 중 범행현장의 혈흔 DNA를 분석해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등 1년 3개월간의 충실한 공소유지로 '22. 7. 7.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함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

- A○○(남, 72세)

● 공소사실 요지

○ '21. 4. 2. 15:00경 익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(72세, 여,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)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추행하고,

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해 다발성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로 사망케 함 **【성폭력처벌법위반(강간등살인), 예비적 죄명 강제추행치사】**

○ ’21. 4. 6. 09:17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익산시 미륵산 헬기 착륙장에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고 낙엽으로 덮음 **【사체유기】**

Ⅱ 수사 경과

- ’21. 4. 6. 익산 미륵산에서 변사체 발견, 강력전담 검사 직접검시 실시
- ’21. 4. 16. 피고인 구속 송치 (죄명 : 살인, 사체유기)

※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(신앙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때리긴 하였으나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, 피해자가 밤샘 기도를 하다 과로사하였다는 취지)하여 사경은 범행 일시와 동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송치

- ’21. 5. 4. **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살인 및 사체유기로 피고인 구속 기소**

■ **피고인이 사체유기 전 ‘혀절단상’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**하고,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, 당청 의료자문위원인 치과의사, 법의학 교수 등 3명의 의사에게 법의학 자문을 의뢰하여 **피고인의 상처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 ‘타인에게 혀를 물린 것으로 판단된다’는 의견 확보**

■ **담당검사의 범행현장 확인, 인근 주민 조사, CCTV 정밀분석** 등의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입 안의 상처를 살펴본 사실을 확인하여 **범행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**

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던 중 혀를 물리자 피해자를 구타해 사망케 한 것으로 판단하고(범행동기)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살인으로 기소

※ **피고인은 ‘넘어져 혀를 다쳤다’는 취지로 주장**

- ’21. 6. 22. **재판 중,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**받아 **대검찰청 DNA·화학분석과의 지원**으로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**혈흔 분석 실시**

■ 경찰은 범행 현장의 모든 혈흔을 피해자의 것으로 간주하고 혈흔 분석보고서 작성

■ 담당검사는 범행현장에 피고인의 혀절단에 의한 출혈이 피해자의 혈흔과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에 착안하여,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을 구분·특정하기 위해 재판 중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의 혈흔 재감식 실시

■ **대검찰청 DNA·화학분석과의 재감식을 통해 현장에 남아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을 구분·특정**함으로써, ① **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량의 피를 흘린 사실(피해자의 사망 원인)**, ② **피고인이 혀절단상으로 현장에서 피를 흘린 사실(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)을 증명**함

※ 담당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가족에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범행현장의 보존을 부탁하여 현장의 혈흔에 대한 재분석이 가능하였음

- ’21. 5. ~ ’22. 6. 공판기일 11회 진행
  - ※ 수사검사가 전 공판기일 직관
  - ※ 피고인은 재판 중 ‘넘어져 혀를 다쳤다’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추행사실 인정(살인의 고의는 부인)
- ’22. 6. 20. 공소장변경 - 예비적 공소사실(강제추행치사) 추가
- ’22. 7. 7. **판결 선고**(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)
  - ※ **예비적 공소사실인 ‘강제추행치사와 사체유기죄’로 징역 13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선고**,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위반(강간등살인)은 무죄
  (구형 : 무기징역,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, 취업제한명령, 전자장치부착명령)
- ’22. 7. 12. **항소제기**(사실오인, 법리오해, 양형부당)

Ⅲ 수사 의의 및 향후 조치

- 범행동기와 구체적인 범행시점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에서 현장검증, 추가 참고인 조사, 법의학 자문의뢰, CCTV 정밀분석 등 구속기간 중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인 후 성폭력처벌법위반(강간등살인) 및 사체유기로 기소

- 수사검사가 모든 공판과정을 직관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현장의 혈흔을 재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징역 13년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냄
- 무죄 선고된 살인부분과 양형을 다투기 위해 1심 판결에 항소 제기하였고,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▨